

웅지세무대학교	정년보장교원심의 위 원 회 규 정	문서번호	6-3-03(C)-0
		제정일자	15.06.01
		최근개정	-
		주관부서	기획처
		홈페이지공개	공 개

웅지세무대학교 기획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웅지세무대학교(이하 "본 대학교"라 한다) 정년보장교원의 임용자격심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정년보장교원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,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교학처장이 된다.

제3조(임기)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중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보직 재임기간을 임기로 한다.

제4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자의 회의출석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5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정년까지 임용할 전임교원에 대하여 그 이전까지의 임용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승진임용 심사자료를 토대로 정년보장교원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.

1. 교원업적평가
2. 전문영역의 학술활동
3. 학생생활 및 취업지도 능력과 실적
4. 산학협동 추진실적
5.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및 비리 여부
6. 국가 및 학교발전 참여도
7. 기타 심사의 기초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6조(사무) 위원회의 사무는 사무처에서 관장한다.

부 칙 <1판-제정/시행 2015.06.01.>

이 규정은 2015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.